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2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

제 2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6가합50330 배당이의

원 고 학교법인 [redacted]

피 고 1. [redacted]재단

2. [redacted]시

3. [redacted]공단

변 론 종 결 2016. 11. 22.

판 결 선 고 2017. 1. 1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. 6. 24.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[redacted]시에 대한 배당액 50,506,664원, 피고 [redacted]재단에 대한 배당액 2,967,205,875원, 피고 [redacted]공단에 대한 배당액 0원을 각 0원으로 경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2

한다.

이 유

1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본다.

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(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)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(민사집행법 제154조 참조), 위 규정에 따라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열리고 그로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, 배당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[1)]

살피건대,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A 배당절차 사건에 관한 배당기일이 2016. 6. 24.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원고가 위 배당기일 이전인 2016. 5. 26.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배당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미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---

1) 참고로 대법원은,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, "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존재하지도 아니한 낙찰허가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,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1998. 3. 9.자 98마12 결정 등 참조)"라고 판시한 바 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2-22

재판장 판사 주진암

판사 노한동

판사 조민혁